직인관리규정

제정 2015.09.21. 규정 제15호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인천관광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직인(회계관계 직인을 포함한다)의 보관방법과 사용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직인의 비치·사용) ①사장 및 회계관계임직원의 직인은 기획조정실에 비치·사용한다.
 - ②사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전용 공인을 비치·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민원전용 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 - ③사장은 원격지의 분리된 부서 및 사업소만 사용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비치·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원격지 부서 및 사업소의 직인의 관리는 부서장 및 사업소장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.
- 제3조(회계관계 직인) 이 규정에서 "회계관계임직원의 직인"이라 함은 수입담당, 물품관리담당, 재산관리담당, 채권관리담당, 채무관리담당, 수입지출외현금출납원, 지출원, 수입원의 직인을 말한다.
- 제4조(직인의 종류·글씨 및 규격) ①공사 직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,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.
 - ②인장의 종류·규격 및 형체는 별표 1과 같다.
- 제5조(각인) 인장에는 기관·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, 기관의 직명 다음에 "인" 또는 "의인"자를 붙인다. 다만, 회계관계임직원의 공인에는 기관명과 회계명을 각인한다.
- 제6조(직인의 등록·재등록 또는 폐기) 인장을 등록·재등록 또는 폐기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인장관리자에게 등록·재등록·폐기신고를 하여야 하며, 새로운 직인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7조(직인대장) 직인 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, 직인을 등록·재 등록·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.
- 제8조(인영의 보존) 사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- 제9조(직인의 사고 등) 직인의 관리자는 직인이 도난,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직인의 관리자) ①직인의 관리자는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. 다만, 회계관계임직원의 직인은 회계담당부서장이 관리한다.
 - ②인장관리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인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 - ③인장관리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장이 인장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.
- 제11조(보관방법) 인장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, 직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인장관리자가 인장함을 봉하여 이중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직인의 날인) ①직인의 날인은 직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.
 - ②임용장, 상장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 및 제 증명 기타 필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 간에 직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간인한다.
 - ③직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직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직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) ①규정된 서식으로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할 수 있다. 다만, 수량은 1년 사용예정량을 초과하지 못한다. 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
 - 사항을 명시하며,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의거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 - 1.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
 - 2. 관계 규정(명칭 또는 조문)
 - 3.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
 - 4. 서식 견본
 - ③인쇄를 할 때는 사장이 지명한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사장에게 인계한다.

부칙<제16호, 2015.09.21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(제4조 관련)

□ 직인규격

종류	구분	형체	규격(단위:mm)
사장직인	인천관광공사사장인(일반용) 인천관광공사사장인(민원전용)	정방사각형	27×27(전서체)
회계관계 임 직 원 직 인	수입담당인, 물품관리담당인, 재산관리담당인, 채 권관리담당인, 채무관리담당인, 수입지출외현금 출납원인, 지출원인, 수입원인	정방사각형	20×20(전서체)
인 감	인천관광공사사장의인	정원형	18이내(전서체)
이 사 인	인천관광공사이사의인	정원형	18이내(전서체)
합의체인	인천관광공사인사위원회위원장인 인천관광공사이사회의장인	정사각형	36×36

□ 직인명

- 인천관광공사사장인(직인)
- 인천관광공사사장인(민원전용)
- 인천관광공사사장의인(인감)
- 인천관광공사수입담당인
- 인천관광공사지출원인
- 인천관광공사수입원인
- 인천관광공사수입지출외현금출납원인
- 인천관광공사재산관리담당인
- 인천관광공사물품관리담당인
- 인천관광공사채권관리담당인
- 인천관광공사채무관리담당인
- 인천관광공사이사의인
- 인천관광공사인사위원회위원장인
- 인천관광공사이사회의장인

[별지 제1호 서식] (제6조 관련)

직인 등록(재등록, 폐기) 신고서

수신: (인장 관리자)

발신: (인)

제목: 직인(등록, 재등록, 폐기) 신청

직	인		명					
형 🧦	체 및	규	격					
등록(사	⁽ 재등 ^토	루, 폐	기) 유					
폐 기		예 전 실			년	월	일	
대상 직인	」 폐 フ	기 방	법	□ 소각	이 전	1	□ 기타()
처리	폐 (분	기 실	자 자)	소속 : 직급 :			성명 :	
비 (참	고 사	ठंहे	고 등)					

[별지 제2호 서식] (제7조 관련)

직인대장

직 인 명						
형 태			7	격		
사용부서						
		등 록 일 (재등록일)		년	월	일
		새 긴 날		년	월	일
			주 소	<u>:</u> :		
등 록		새 긴 사 람	업체명	:		
· 재등록	(인 영)		성 명	:		
제공목 - 직 인		최초사용일		년	월	일
7 2		재 료				
		등록(재등록)사 유				
		비고				
		등 록 일 (재등록일)		년	월	일
		폐기일(분실 일)		년	월	일
폐기		폐기사유	□마멸	□분실	□기타()
직 인	(인 영)	폐기방법	□소각	□이관	□7]EH()
		폐 기 자	소속			
		(분실자)	직급	j	성명	
		비 고				

[※] 직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✔표를,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 에 ✔표를 한다.

[※]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.

[별지 제3호 서식] (제8조 관련)

<u>인영부</u>

인장명		인영	
	년 월 일	년 월 일	년 월 일
	신조·개각	신조·개각	신조·개각
	년 월 일	년 월 일	년 월 일
	신조·개각	신조·개각	신조·개각
	년 월 일	년 월 일	년 월 일
	신조·개각	신조·개각	신조·개각

[별지 제4호 서식] (제9조 관련)

직인 사고보고서

다음과 같이 직인 관리 중 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합니다.

1. 사고 직인명	
2. 사고 개요	○ 발 생 일 :○ 발생장소 :○ 사 고 자 :
3. 사고내용	
4. 사고발생후의 처리전말	
5. 향후 조치계획	

20 . . .

보고자:(직인 관리자) (인)

[별지 제5호 서식] (제13조 관련)

<u>직인사전날인신청서</u>

는 전 · (인상 판 발 전 : 시행일 :	(인)		
아래와 같이 직인	을 사전 날인하여	주시기 바랍니	구.
1. 사용목적			
2. 사전날인근거			
3. 수 량		4. 사용예정기간	
5. 직 인 명			
6. 비고			

[별지 제6호 서식] (제 13조 관련)

수 신:(인장 관리자)

<u>인영인쇄사용신청서</u>

 사용목적 인쇄사용근거 			
3. 인쇄수량	4. 인쇄업소 및 대표명		
5. 공인명	6. 제판규격	원형(확대(축소()
7. 사용기간	8. 반납일시		
9. 입회자작성명			